

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(제14-3판) 개정 전 · 후 비교표

<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>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1	<p>I. 대응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법적근거) 코로나19는 '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,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'제2급감염병'으로 대응함 (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가목, 질병청 고시, '22.4.2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검역법」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·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○ (대응방향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-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</p> <p style="margin-top: 5px;">-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,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</p> <p style="margin-top: 5px;">-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'코로나19 검역대응 FAQ' 참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적 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등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「감염병예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'제2급감염병'으로 대응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근거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7호) 제1호가목 ○ (현행과 같음) 2. 대응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른 '권고' 및 '자율' 기조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 절차로 전환 ○ 향후 발생 상황, 변이 발생 여부,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정의와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하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항만의 코로나19 관련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<p style="margin-top: 5px; color: red;">- (삭제)</p>	<p>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13-3판) 반영</p>

- 1 -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2	<p>II. 사례정의 등</p> <p>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'심각단계' 상황에 적용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'경계단계'----- ----- -----</p>	<p>감염병 위기단계 하향</p>
2	<p>1. 사례정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* <p>* 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</p> </div> <p>○ 확진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</p> <p>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</p> </div>	<p>1. 사례정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* <p>* 한시 시행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</p> </div> <p>○ 확진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한시 시행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</p> <p>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</p> </div>	<p>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13-3판) 반영</p>

- 2 -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3	<p>2. 감염병의심자 정의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0.3.4. 시행)</p> <p>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</p> <p>①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</p>	<p>2. 감염병의심자 정의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3.5.19 시행)</p> <p>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</p> <p>①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(이하 “접촉자”)</p>	

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			
4	<p>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p>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22.9.3.~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- 기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 -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격리·치료하는 것을 권고함 <p>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(별도 제출서류 없음) ※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://cov19ent.kdca.go.kr 에서 확인 가능 <p>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22.6.8.~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 <p>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</p>	<p>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22.10.1.~) ◆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중단(23. 6. 1.~) <p>[지속 추진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◆ (현행과 같음) 	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종료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증상자</td> <td>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□ 무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</th> <th>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</td> <td>보건소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 외국인</td> <td>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구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	격리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보건소	확진자 격리	단기체류 외국인	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확진자 격리	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증상자</td> <td>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□ 무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/ 외국인</td> <td>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</td> <td>양성</td> <td>확진자 격리 권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내국인/ 외국인	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	양성	확진자 격리 권고			음성	-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	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보건소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 외국인	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/ 외국인	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	양성	확진자 격리 권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음성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5	<p>3. 입국검역</p> <p>◆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</p> <p>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</p> <p>◆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,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(10.1.~)</p> <p>◆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(10.1.~)</p> <p>◆ 추후 신증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</p>	<p>3. 입국검역</p> <p>◆ (현행과 같음)</p> <p>◆ (삭제)</p> <p>◆ (삭제)</p> <p>◆ (삭제)</p>	<p>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종료</p>
5	<p>3. 입국검역</p> <p>가. 입국검역 개요</p> <p>○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</p> <p>○ (구성) 입국자 발열 여부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건강상태질문서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</p> <p>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</p> <p>○ (검역정보 확인)</p> <p>- (Q-CODE 이용자)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,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</p> <p>- (Q-CODE 미이용자)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 정보를 Q-CODE에 입력하고, 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</p> <p>○ (입국 후 검사) 검사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</p> <p>* 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(무료) (단기체류 외국인)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(비용 본인부담)</p>	<p>3. 입국검역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○ (검역정보 확인)</p> <p>- (Q-CODE 이용자)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정보 확인</p> <p>- (Q-CODE 미이용자)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Q-CODE에 건강상태 정보 입력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 정보 확인</p> <p>(이하 삭제)</p>	<p>검역소 의견 반영</p>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	<p>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</p> <p>◆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.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, 항공권, 입국심사 확인증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</p>		
6	<p>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</p> <p>○ (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</p> <p>* 기내 승객 및 승무원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</p> <p>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)</p> <p>*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철저 및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</p>	<p>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</p> <p>○ 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</p> <p>* 기내 유증상자 및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</p> <p>○ 유증상자 검역조사</p> <p>*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,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</p>	<p>마스크착용 방역지침(제9판) 반영</p>
8	<p>○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p>* (미국 외교관(A1)·관용여권(A2)·주한미군(A3))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PCR 검사 실시, 주한미군(A3)은 자체관리</p> <p>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</p> <p>○ (검역조사)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</p> <p>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</p> <p>○ (무증상자 조치)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</p> <p>①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</p> <p>-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</p> <p>② (단기체류외국인)</p> <p>-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비용 본인부담)</p>	<p>○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p>(삭제)</p> <p>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</p> <p>(삭제)</p> <p>○ (내국인·외국인)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등에서 검사(비용 자부담)</p> <p>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</p> <p>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</p> <p>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</p>	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
10	<p>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</p> <p>1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및 용어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 ◆ 입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객선 선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및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 -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7일간 격리.치료하는 것을 권고함 ◆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,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(10.1.~)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	<p>1. 항만 검역대응 주요 용어 정의</p> <p>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중단 요구('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 ◆ 검사의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중단('23. 6. 1.~) <p>[지속 추진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◆ (현행과 같음) 	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종료																								
10	<p>2.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</p> 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증상자</td> <td>검역소 (선박 내 대기)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유증상자 검사결과 '음성' 확인 후 입국절차(하선자) 진행</p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검역소 (선박 내 대기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음성	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<p>3.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</p> 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증상자</td> <td>검역소 (격리관찰실 또는 선내 별도 공간 검체채취)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삭제)</p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검역소 (격리관찰실 또는 선내 별도 공간 검체채취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음성	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검역소 (선박 내 대기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
	음성	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검역소 (격리관찰실 또는 선내 별도 공간 검체채취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▲선박 내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
	음성	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
11	<p>□ 무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</th> <th>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재승선 내국인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상륙허가자)</td> <td>의료기관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검역조사</p> <p>가. 승선·비승선 검역</p> <p>○ -----선원 및 승객-----</p> <p>나. 하선절차</p> <p>③ (입국 후 검사) 검사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 * 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(비용 본인부담)</p> <p>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.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</p> <p>◆ 해외입항자(항만)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. 입국 후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, 승·하선 공인 서류 또는 하선일자가 적힌 선원명부 등 해외입국자(항만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</p>	구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	격리	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재승선 내국인)	보건소	확진자 격리	단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상륙허가자)	의료기관	확진자 격리	<p>□ 무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하선자(내국인/외국인) - 입국자 - 재승선 내국인 - 상륙 허가자</td> <td>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</td> <td>양성</td> <td>확진자 격리 권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음성</td> <td>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. 검역조사</p> <p>가. 승선·비승선 검역</p> <p>○ -----탑승자 전원-----</p> <p>나. 하선절차</p> <p>(삭제)</p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하선자(내국인/외국인) - 입국자 - 재승선 내국인 - 상륙 허가자	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	양성	확진자 격리 권고		음성		-	검역소 의견 반영
구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	격리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재승선 내국인)	보건소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 (입국자 및 상륙허가자)	의료기관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	
하선자(내국인/외국인) - 입국자 - 재승선 내국인 - 상륙 허가자	의료기관 (비용 본인부담)	양성	확진자 격리 권고																					
	음성		-																					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여객선) 유증상자를 우선 하선하여 검역소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 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여객선) 유증상자를 우선 하선하여 분리조치 후 검역소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 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<p><추가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(격리 중 국외 출항하는 경우 IHR 통보) 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(PCR 검사) ③ 확진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(이동금지, 선박소독, 비대면 하역 작업 등) ④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및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로 크루즈선 내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메모보고 실시(종합상황실 확진자 통계 보고는 제외) </div>	검역소 의견 일부 반영
14	<p>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조사)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○ (무증상자 검역조치) 하선자*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 외국인인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 가능(본인 입증 책임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무증상자 검사장소) 하선유형에 따라 검사장소가 다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·재승선내국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② (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·상륙허가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비용 본인부담) 	<p>6. 무증상자-검역조사-조치 (삭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국인·외국인)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등에서 검사(자부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 권고 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 	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<p>V.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</p>			
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 -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▷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▷ (삭제)</p> </div>	
16	<p>가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양성 확인) 검사결과·양성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 <p>나.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임시 격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격리 장소)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* 선박 하선자의 경우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, 선사나 해운 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	<p>1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양성 확인) PCR 검사결과 '양성'인 경우,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 <p>2.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임시 격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격리 장소)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<p>(삭제)</p>	전문가용 RAT는 통계에서 제외
17	<p>다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검사 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치료 안내 또는 관할 시·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(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) - (검사 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며,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(또는 공중보건)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	<p>3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검사 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 안내, 필요시 관할 시·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 요청(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) - (검사 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며,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(또는 공중보건)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 	
<p>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</p>			
19	<p>2. 격리병상 배정 요청</p> <p>※ (인천공항 확진자 이송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인천소방본부에서,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</p>	<p>2. 격리병상 배정 요청</p> <p>※ (인천공항 확진자 이송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검역소 앰블런스로,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</p>	소방지원 종료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20	3.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 ○ (이송수단) 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<u>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</u>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 ○ (방역수칙) 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,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	3.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 ○ (이송수단) 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<u>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</u>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 ○ (방역수칙) 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,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	
21	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(항만) ○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(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 * 확진자 격리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 ○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(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황은 제한) ○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PCR검사 결과 확인	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(항만) ○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(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 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 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 ○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(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황은 제한) ○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 PCR검사 결과 확인	5일 격리 권고 전환 격리통지서 발급 중단
VII. 접촉자 관리			
22	2.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 ※ 확진자 조치 및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접촉자 중 유증상자 조사 결과(PCR 검사결과 음성) 확인 이후 선박 이동금지 해제(확진자가 선내 격리 중인 경우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이동금지 해제 가능) ※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	2.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 ※ 선박 이동금지 해제 기준(모두 부합 시 해제 가능) ① 확진자 조치(격리 권고 등) 후 선박 소독 완료가 확인된 경우 *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 ② 동승 선원(또는 승객) 접촉자 중 유증상자의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 * 단, 코로나19 검사 외에 타 감염병 진단검사를 함께 수행 중인 경우, 해당 감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 이동금지 해제	검역소 의견 반영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
VIII. 기타 행정사항			
24	○ (재검출자 사례) ※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○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- 특별검역신고서 : 1개월 *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	○ (재검출자 사례) ※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 ○ (건강상태질문서) 보관기간 1개월	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13-3판) 반영 특별검역 신고서 삭제
25	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■ 검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9. 9. 24.>	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- 서식 변경 ■ 검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1. 3. 5.>	
27	서식 3 특별검역신고서 및 Q-code 이용 안내	(삭제)	
31	서식 6 격리통지서	(삭제)	격리통지서 발급 중단
42	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5. 검사 결과 보고 ○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, 역학조사관(또는 공중보건)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	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5. 검사 결과 보고 (삭제)	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13-3판) 반영

p	현 행(14-2판)	개 정(14-3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	<p>부록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</p> <p>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<u>권장 범위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 264 739 483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구분</th> <th rowspan="3">상황, 행위</th> <th colspan="6">개인보호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호흡기 보호</th> <th colspan="2">전신 보호</th> <th colspan="2">눈 보호</th> </tr> <tr> <th>수술용 마스크▶</th> <th>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</th> <th>전동식 호흡기 보호구</th> <th>일회용 장갑¹⁾</th> <th>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</th> <th>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검역</td> <td>검역(검역조사)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검역(역학조사)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						호흡기 보호		전신 보호		눈 보호		수술용 마스크▶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¹⁾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	검역	검역(검역조사)	●		●					검역(역학조사)	●		●	●	●		<p>부록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</p> <p>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<u>권장 범위(예시)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68 264 1426 483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구분</th> <th rowspan="3">상황, 행위</th> <th colspan="6">개인보호구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호흡기 보호</th> <th colspan="2">전신 보호</th> <th colspan="2">눈 보호</th> </tr> <tr> <th>수술용 마스크▶</th> <th>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</th> <th>전동식 호흡기 보호구</th> <th>일회용 장갑¹⁾</th> <th>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</th> <th>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검역</td> <td>검역(검역조사)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검역(역학조사)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●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						호흡기 보호		전신 보호		눈 보호		수술용 마스크▶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¹⁾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	검역	검역(검역조사)	●		●					검역(역학조사)	●		●	●	●		<p>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13-3판) 반영</p>
구분	상황, 행위			개인보호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호흡기 보호		전신 보호		눈 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술용 마스크▶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¹⁾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역	검역(검역조사)	●	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검역(역학조사)	●		●	●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호흡기 보호		전신 보호		눈 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술용 마스크▶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¹⁾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역	검역(검역조사)	●	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검역(역학조사)	●		●	●	●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7	<p>부록 4 항만 입항 군용(軍用) 운송수단 검역절차</p> <p>③ 하선자 증상별 관리</p> <p>○ (무증상자) 하선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- (특별검역신고서)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생략 가능</p> <p>④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</p> <p>○ ('음성'인 경우) 하선 허용 및 검역확인증 발급</p> <p>○ ('양성'인 경우) 확진자는 재택, 병원 이송 - (접촉자)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(해군 등) 관리 하 10일간 수동감시 - (하역 등 작업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</p>	<p>부록 4 항만 입항 군용(軍用) 운송수단 검역절차</p> <p>③ 하선자 증상별 관리 (삭제)</p> <p>④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</p> <p>○ (음성) 하선 허용 <u>및 검역확인증 발급</u></p> <p>○ (양성) <u>확진자는 재택격리 권고, 필요시 병원 이송</u></p> <p>- (접촉자)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(해군 등) <u>관리 하에 감시 권고</u> - (하역 등 작업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<u>작업 권고</u></p>	<p>5일 격리 권고 전환</p> <p>접촉자 수동감시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8	<p>○ (확진자 이송 불가시)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,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(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 * 확진자 격리기간 :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 ※ 예) 5월 1일 검체채취한 경우, 5월 7일 자정(24시)까지 격리</p> <p>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(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)</p>	<p>○ (확진자 이송 불가시)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에서 <u>격리 권고(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</u> 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 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 ※ 예) 6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.5. 24:00까지 격리 권고</p> <p>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(<u>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</u>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